손해배상(기)

[수원지방법원 2014. 7. 17. 2013나41513]



【전문】

【원고, 항소인 겸 피항소인】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.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최성호) 【피고, 피항소인 겸 항소인】

【제1심판결】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. 9. 24. 선고 2012가단49376 판결 【변론종결】2014. 6. 19.

【주문】

]

- 1.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- 2.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- 3.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가.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나.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가.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나.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가.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나.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가.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나.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가.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나.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가.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나.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가.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나.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【이유】

】1. 인정사실

-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 제1의 다.
- 항 다음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, 제19면 제20행의 '지에이콜서비스'를 '지제이콜서비스'로 고치며, 제21면 제3행의

【이유】

】1. 인정사실

-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 제1의 다.
- 항 다음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, 제19면 제20행의 '지에이콜서비스'를 '지제이콜서비스'로 고치며, 제21면 제3행의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